

어린이 안전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운영실태



글 | 권흥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장

1. 머리말

어린이들은 일반 성인에 비하여 판단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현대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 화재사고 등 산업발달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 발전에 따른 폭력사고, 유괴사고 등 인위적 위험에도 그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CISS*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6년의 경우 2003년에 비해 무려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대책의 재점검을 통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접수건수	2,342건	3,345건	4,040건	4,541건
증가율	-	42.8%	20.8%	12.4%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편 예방적이고 직접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니지만 어린이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어린이 안전관련 보험도 안전사고에 대한 유효한 관리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어린이관련 보험상품은 질병, 상해, 교육 등 다양하게 많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상품으로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위주로 그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전국 65개 종합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 상담, 핫라인, 어린이 안전넷 등으로부터 수집한 위해정보 DB 및 감시시스템.

2. 상해보험 현황 및 운영실태

먼저 상해보험에는 일반 성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 입·통원비 보상 등의 상품을 포함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생활 중 사고·유괴·납치·불법 감금·학원폭력 또는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어린이들에게 취약한 위험을 보상하는 특화된 상품들이 판매 중에 있다. 이러한 특화된 상해보험 상품은 회사별로 다양하게 많으나 이를 주요담보구분별 보상내용과 시장현황을 FY200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주요담보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담보구분	주요 보상내용	계약건수	보험료
교육기관생활중 상해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학교의 수업일(토요일 포함)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72	1,448
학교 및 유아원 생활중 상해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학교의 수업일(토요일 제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132	2,053
청소년폭력 상해	피보험자(5세 이상 20세 미만)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15	15
학원폭력 상해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1,102	20,182
골절발생	골절사고 발생시 위로금 지급	5,488	182,722
골절수술	골절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 보상	3,479	45,890
화상발생	화상사고 발생시 위로금 지급	4,791	25,454
화상수술	화상이 발생하고 수술을 한 경우	1,985	518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신체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이 발생한 경우 보상	1,255	3,926
미성년자 유괴 인신매매	피보험자(만20세 미만)가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보상	344	180
유괴납치 인질위로금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보상	917	523
청소년 정신피해	피보험자(5세 이상 20세 미만)가 타인의 폭력 또는 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706	1,616
합 계		20,287	284,527

* 손해보험상품 중 어린이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상품이며,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 영업보험료 기준임.

또한 단체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위험을 보상하는 상품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위험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포함하여 스카우트 대원·해양소년단체·RCY 등과 같이 특정 단체활동 중에 발생하게 되는 상해위험을 보상하는 상품들이 있다. 이의 대표적인 상품이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인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현황

가입대상	교육기관 운영자
보상하는 손해	- 재산위험담보 : 화재 등의 손해 - 신체위험담보 : 교육기관 생활중의 상해손해 - 배상책임위험담보 : 교육시설 운영 및 업무중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보험료 수준	- 상해위험 담보(사망·후유장해 1억, 의료비 1천만원, 학생 1인당) · 유치원 : 3,468원, · 초등학교 : 5,019원 - 배상책임위험 담보 :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특약 요율 준용
FY2006 판매실적	- 상해위험담보 : 건수 154,709건, (유치원, 초등) 보험료 3,223백만원 - 배상책임담보 : 건수 30,094건, (전체) 보험료 1,044백만원

3. 배상책임보험 현황 및 운영실태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의 운영자가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의 대표적인 상품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학교경영자 특약이 있으며 동 특약은 유치(아)원·초등학교의 경영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특약의 경우 놀이시설에 대한 소유(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어린이 안전관련 배상책임보험 현황

구분	영업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가입대상	유아교육기관(유아/유치원 등) 운영자	유아놀이시설 운영자 (유아 대상 실내놀이시설)	아파트 시설관리자
보상하는 손해	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유아놀이시설의 운영 및 업무 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아파트 내 놀이터의 용도에 따른 사용중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보험료 수준	가입조건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보 험 료 : 학생정원 1인당 1,149원	가입조건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00평 이하 시설 보 험 료 : 562,516원	가입조건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200평 이하 시설 보 험 료 : 246,036원
판매 실적	- 유 치 원 : 건수 3,275건 보험료 111백만원 - 초등학교 : 건수 44건 보험료 5백만원	- 건수 215건 - 보험료 206백만 원	FY2006 판매 개시되어 실적 집계 없음

※ 보험료는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적은 FY2006년 영업보험료 실적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썰매장 등의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 보험의 실적은 FY2006년 기준, 계약건수 3,249건이며 수입보험료 5,357백만 원이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도장·롤러스케이팅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안전 측면에서는 의무보험으로 불완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단체활동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해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되고 있는데, 2007년 1월 26일 FY2006년 기준으로 계약건수는 2백81건이며 수입보험료는 726백만 원이다.

한편, 다양한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의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성 및 피해보상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안전검사기관까지 어린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어린이 공원,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전국적으로 6만 2천여 개소에 산재해 있는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어린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중에는 장래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신체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도 하나일 것이므로 어린이를 둘러싼 안전관련 위험을 항상 파악하여 보험사각지대는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관련 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100%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보상한도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필요시 보험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